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66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박정하 · 조은희 · 배준영
안철수 · 김승수 · 김석기
박성훈 · 권영진 · 박충권
김태호 · 우재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 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제2호 중 “교육사업”을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생략)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⑥ (생략)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u>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u>교육사업</u> <u><신설></u> 3. ~ 6. (생략)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u> <u>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